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방안(완)

이상정 · 경희대 법학과 교수

임근영 · 연구센터 연구원

4) 소 결

지식재산권은 현재도 방대한 영역을 포함하지만 앞으로도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재산이 탄생할 것이다. 이렇게 새로이 발생하는 지적 창작물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또 기존의 지식재산도 복합적 보호가 필요하여 이를 보호방법을 통괄하는 단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보호방법은 부적합하여 새로운 보호방법을 채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분산관리를 하는 경우는 보호가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로 인하여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려 하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지식재산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단체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전혀 없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소수이기는 하나 지식재산권의 통합 관리, 지식재산권청의 신설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하물며 우리는 아직 지식재산의 총량에서는 물론, 지식재산권에 관한 전문가의 수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과 대등한 입장에서 논할 처지가 아니다. 이렇게 약한 입장에 있는 우리로서는 모자라는 힘이나마 뭉쳐야 하며, 흩어져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정보사회, 경제 전쟁시대에 적합한 우리만의 지식재산권 관리체제

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대만의 지식재산 통합관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준다.

5) 지식재산부의 조직

기본적으로는 현재 지식재산관련 제 기관에 흩어져있는 심사·등록업무를 통괄하여야 그러나 이에 그칠 것은 아니다. 어느 부분이 더 추가되어야 할지는 새로운 제도의 창설시 제외국 및 WIPO와 같은 국제기관의 조직 및 기능을 참고하여 더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지식재산권의 경제 전략적 중요성에 비추어, 대외적으로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기능을 수행할 중심부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기능을 보좌하는 연구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권리자가 자기의 권리를 신속·간이·저렴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국을 두어야 한다.

5. 결론

지식재산이 통합관리 되지 못함으로써 오는 보호의 중복, 부적합,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법이 하나의 법전으로 통합되고 이를 관리하는 기관도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 지식재산권법의 통합화나 인력·예산·전문성이 확보된 전담 부서 설치

되지 않는 한 지식재산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체계는 지속될 것이고 이것은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가져올 것이다. 지금이 경제전쟁시대·특허전쟁·정보전쟁 시대라면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는 체제가 효율적·유기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며 21세기 지식사회에 대비한 지식재산부로 새로이 태어나야 할 것이다.

그렇기는 하나 통합관리에 대한 특허청 특의 아니 시어티브에 대해 저작권과나 저작권 관련 단체의 반발이 거세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즉시 위와 같은 체제로 나가기는 힘들지 모른다. 이러한 반발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도 지식재산을 관리하는 특허청과 저작권과의 대화 부족이 커다란 원인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두 기관 모두 지식재산을 관리한다는 동질성을 가지고 새로운 21세기에 대비한 부처 마련이라는 공통된 의식 하에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궁극적으로 지식재산부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 관리부처의 부분 통합

현재 서너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식재산 관리 업무를 우선 두 곳으로 통합한다. 즉 산업재산권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신지식 재산권은 산업자원부 특허청으로 통합하고, 저작권 및 저작권적 보호가 적합한 신지식재산권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로 통합한다.

● 지식재산권대책위원회 신설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식재산권 대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관련 정부 기관의 담당 국장과 민간인(지식재산 전문가 및 변호사)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의 주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조율과 아울러 통합관리를 추진하는 산파역을 하도록 한다. 위원회 신설 이전이라도 업무의 사전 조율을 위한 특허청과

문화관광부간의 정기적인 대화 통로를 마련한다.

● 지식재산직제 신설

새로이 지식재산직제를 신설하여 특허청과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에는 이들만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이해를 증진시킨다.

● 통합 연구소 신설

지식재산권대책위원회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적 전략수립을 위하여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연구센터를 설립한다.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소인 만큼 지역별(예컨대 미국, 유럽, 아시아) 연구 및 국제조약에 대한 연구 부서로 구성한다. 지역 내에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 보호대상별로 각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원을 2인 일조로 구성한다. 아울러 법제 정비 부서를 두어 국내 지식재산법에 대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개정방향을 결정한다.

● 통합법전편찬위원회 설치

우리는 지식재산의 중복 보호, 부적합한 보호, 보호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또 장차 지식재산 관리부서의 통합을 위해서 먼저 지식재산법전의 통합을 권고한다. 1998년에는 그 사이 논의되어 오던 실용신안법의 개정도 마쳐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대체로 개정이 마무리되었다고 본다. 또 1999년에는 디지털 기술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의 개정도 마무리 될 것이다.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서의 정비를 바탕으로 두 법제의 조화를 위한 검토가 1999년에는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법제 검토 내지는 통합 법전 편찬을 위한 위원회가 1999년 중에 설치되어야 하며, 이에는 관련 정부 기관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학계와 실무계도 참여하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법계의 총력이 모아져야 한다. 이 기회에 아울러 언뜻 보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든 법조문의 내용도 보다 쉬운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발특9904